

신탁계약변경 신구조문 비교표

펀드명 : 코람코퍼시스템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2호

개정 시행일 : 2014.12.30 예정

조항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	[제정 2014.11.18], 시행일 2014.11.18	[제정 2014.11.18], 시행일 2014.11.18 [개정 2014.12.30], 개정 시행일 2014.12.30	
제5조	제5조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. 다만,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제5조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) ① (좌동) ② (좌동)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. 명확히 하면 최초설정일은 2014년 12월 30일이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만료일은 2017년 12월 30일 이다. 다만,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4.12.30>	최초설정일을 실제 신탁원본 최초납입일인 2014년 12월 30일로 기재하여 신탁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함.
제31조	제31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제1기의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5년 1월 31일, 제2기의 경우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이며, 이후 매2개월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제31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)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제1기의 경우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월 29일까지, 제2기의 경우 2015년 1월 30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, 제3기의 경우 2015년 2월 27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이며, 이후 제4기부터는 매 2개월간으로 한다(명확히 하면 제4기는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이며, 제5기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이다)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4.12.30>	대출실행일정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함.
제39조	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투자신탁 설정금액에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해당하는 보수율과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3 (30bp) 2~4. (생략)	③ <좌동>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1.5 (15bp) 2~4. (좌동) <개정 2014.12.30>	집합투자업자보수율 인하